

실제 적용과정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3577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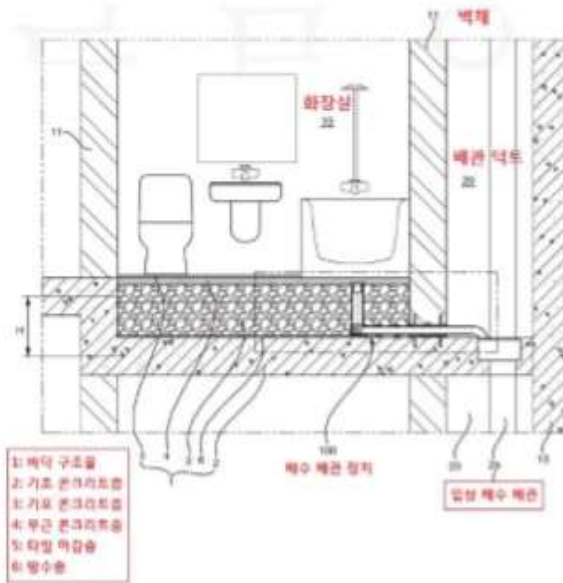


1. 특허발명의 요지

다) 해결하려는 과제(목적)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건물의 각층 바닥 구조물 중에서 특히, 습식 화장실 바닥 구조물을 이루는 기포 콘크리트층 내에 함유된 수분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바닥 구조물 내부 배수 배관 장치 및 그 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8]).

라) 주요 도면 및 구체적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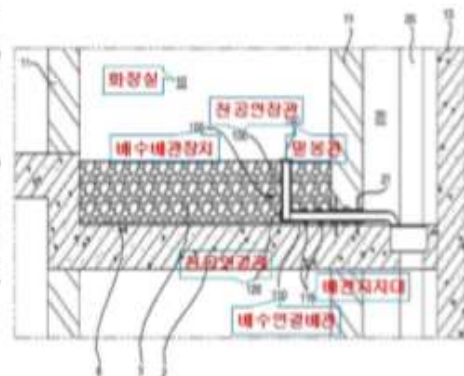
도 1



도 3

기포 콘크리트층 형성 단계(ST20)에서는,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기초 콘크리트(20) 상에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상기 천공 연장관(130)에 대응되는 높이로 상기 기포 콘크리트층(3)을 형성한다(문단번호 [0054]).

이때, 밀봉관(140)이 끼워진 상기 천공 연장관(130)의 상측 단부가 타설된 기포 콘크리트에 의해 매립되지 않고 노출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문단번호 [0055]).



도 7

2.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

실제 시공될 경우 밀봉관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천공연결관과 천공연장관의 사이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어 그로 인해 밀봉관이 접착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문제점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것이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익을 현저히 넘어서 결국 그 발명의 이용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

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3577 판결

변리사 22년/변호사 14년 경력, 특허심판소송, 손해배상, 형사소송, 해외분쟁, One-Stop 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